

# 입법정책정보

-제14호-



대전광역시의회

○ 입법정책정보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사항과 최신 외국정보 등을 법제처 국가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됩니다.

# || 목 차 ||

<b>I. 상위법령 제·개정</b> .....	1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1
2. 모자보건법 .....	4
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6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10
5. 환경영향평가법 .....	13
<b>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b> .....	18
1. 광주광역시 친환경 도시조명 설치 및 운영 조례 .....	18
2. 세종특별자치시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21
<b>III. 자치법규 참고정보</b> .....	23
<b>IV. 최신 외국 입법정보</b> .....	27

# | 상위법령 제 · 개정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14호, 2024. 2. 20., 일부개정]

### □ 제정 · 개정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규정하고,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 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함.

<법제처 제공>

### □ 주요내용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호별 방문
2.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금의 횟수와 내용,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 · 신용카드 · 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 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모집·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1.] [대전광역시조례 제5921호, 2022. 12. 30., 제정]

**제6조(예산 편성)**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설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대전광역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 모자보건법

[시행 2024. 2. 6.] [법률 제20215호, 2024. 2. 6., 일부개정]

## □ 제정·개정이유

○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 중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 주요내용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의2(난임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 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

[시행 2017. 12. 29.] [대전광역시조례 제5061호, 2017. 12. 29.,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부부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방난임치료”란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등 한방의료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사업
- 2. 한방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 사업
-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위탁)**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 치료 지원에 한해서는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6조(반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29호, 2024. 2. 20., 일부개정]

## □ 제정·개정이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장기 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의 건강상태 추적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법제처 제공>

## □ 주요내용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교육·홍보 및 교육·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
5.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확대 및 지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안내
  - 가.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 나. 「여권법」 제4조에 따른 여권
  - 다. 「도로교통법」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 라. 「선원법」 제48조에 따른 선원신분증명서

**제14조(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①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나 제16조제4항에 따른 뇌사판정기관의 장(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제15조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에 한정한다)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장기등기증자의 경우: 제12조 및 제22조에 따른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 여부와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등록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 장기등기증자로 적합한지 여부. 다만, 장기등기증자로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 결과가 있으면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장기등이식대기자의 경우: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적합한지 여부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하면 그 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항목 및 방법,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⑤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한 사람이 장기등의 기증 등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28조(기록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출·이식 및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해당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록을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장기등 이식을 받은 사람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 거부 등 기록 작성 및 제출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제2항에 따른 제출 기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기록의 보존)** ①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4항에 따른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뇌사판정에 관련된 자료를 1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이식 및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반된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제3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및 접수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제5항에 따라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의 사본 등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보내지 아니한 경우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28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이식 및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시행 2021. 12. 29.] [대전광역시조례 제5740호, 2021. 12.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의 기증이 활성화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기등”이란 신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
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체조직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시장은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등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 설치)** ① 시장은 장기등 기증을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장기등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구청장에게 장기등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의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조직기증자를 말한다) 및 그의 가족 또는 유족(이하 이 조에서 “유족등”이라 한다)에게 실시할 수 있는 예우 및 지원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2. 개별 조례가 정하는 각종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3.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추모 공원 조성 또는 조형물 건립
  4. 유족등을 대상으로 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5. 유족등의 자조모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장기등의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유족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2(홍보활동)**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등록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고 홍보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2.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3. 그 밖에 홍보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② 시장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3(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시민들의 장기등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23호, 2024. 2. 6., 일부개정]

## □ 제정·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법제처 제공>

## □ 주요내용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

2.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⑦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15. 12. 31.] [대전광역시조례 제4647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2. 대전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3.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4.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은 해당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이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 ⑤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구매 협조요청)**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생산제품 정보 및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과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 및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34호, 2024. 2. 20., 일부개정]

## □ 제정·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원칙에 환경영향평가 등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실시되도록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일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법제처 제공>

## □ 주요내용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평가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5.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6.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고·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 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 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 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 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 ④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요청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시행 2019. 1. 1.] [대전광역시조례 제5182호, 2018. 12.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① 대전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 요청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협의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의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대전광역시 소속 4급 이상의 관계 부서 공무원

3. 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후환경정책과장이 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준용)**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은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조, 제12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66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및 제5항,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은 각각 “대전광역시장”으로 본다.

##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 광주광역시 친환경 도시조명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2. 23.] [광주광역시조례 제6349호, 2024. 2. 23., 제정]

#### □ 제정이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친환경 도시조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에너지·자원을 이용한 도시조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서 「광주광역시 빔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시조명”이란 도시의 공간 또는 각종 시설물 등의 기능 제고 또는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조명기구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
3. “녹색제품”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자원을 사용하여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4. “친환경 도시조명”이란 녹색제품을 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을 통해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도시조명을 말한다.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조명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친환경 도시조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범죄예방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 도시조명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친환경 도시조명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조명 관리의 목표와 방향
2. 도시조명의 현황분석
3. 친환경 도시조명의 에너지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 실적
4. 친환경 도시조명 관련 기술의 개발·촉진 방안
5. 친환경 도시조명 활성화를 위한 설치 지원 방안
6. 친환경 도시조명에 관한 교육·홍보 방안
7. 친환경 도시조명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8. 그 밖에 친환경 도시조명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관리계획은 「광주광역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친환경 도시조명에 대한 수요 및 친환경 도시조명 설치·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친환경 도시조명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친환경 도시조명의 설치·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도시조명 설치·교체 및 지원
2. 친환경 도시조명 디자인 및 기술개발 지원
3. 친환경 도시조명 시범사업 운영
4. 친환경 도시조명에 대한 교육·홍보
5. 친환경 도시조명을 이용한 야간경관 조성 및 정비 지원
6. 그 밖에 친환경 도시조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범사업 운영)** 시장은 친환경 도시조명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술 도입 촉진, 친환경 도시조명 확산 등을 위하여 친환경 도시조명을 활용한 거리, 마을, 공원, 관광지 조성 등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 도시조명에 대한 인식개선과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 도시조명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친환경 도시조명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 민간기업,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409호, 2024. 2. 26., 제정]

## □ 개정이유

최근 지역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2.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CCTV 설치·증설 등 환경 개선 사업
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4.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 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신고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1.

[안건번호: 의견23-0159 / 요청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 □ 의뢰안건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를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 로 볼 수 있는지(「아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관련)

#### □ 주요내용

##### [질의요지]

「아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충청남도아산시규칙 제773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한다) 부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 을 적용받아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를 같은 조 제1항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 로 볼 수 있는지?

##### [의견]

「아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충청남도아산시규칙 제773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한다) 부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 을 적용받아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1항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 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구 「아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충청남도아산시규칙 제7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서는 「담배사업법」 제16조제4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제2조제1항)하는 등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었는데, 「아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충청남도아산시규칙 제773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아산시규칙” 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제3조제1항)하는 등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이격거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한편 개정 아산시규칙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칙 제1조 본문에서는 이 규칙은 공포일 이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기존 소매인에 대한 지정을 개정 아산시규칙에 따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이 규칙 공포일 이전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건물(공포일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은 제외) 내 위치한 영업소에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 규칙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2년간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소매인 지정 한 차례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물 내에 위치한 영업소의 지정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아산시규칙 부칙 제1조에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2조제5항에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고 있으므로, 같은 부칙 제2조제5항의 적용은 제3조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정 아산시규칙 부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같은 부칙 제2조제1항의 적용 대상인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아산시규칙 부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1항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2.

[안건번호: 의견23-0118 / 요청기관: 전라남도 장흥군]

### □ 의뢰안건

조례로 법인묘지에 적용되는 설치제한지역을 규정할 수 있는지(「장흥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관련)

### □ 주요내용

#### [질의요지]

조례로 법인묘지에 적용되는 설치제한지역을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 조성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4항에서는 법 제1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1호에서는 붕괴· 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군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1호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법인묘지에 적용되는 설치제한지역을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헌법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법률이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1호의 ‘붕괴· 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사설묘지의 면적 기준에서는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의 면적은 각각 100제곱미터 이하, 1천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법인묘지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묘지의 면적은 다른 사설묘지의 100배에서 3,300여 배 이상이 되므로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다른 사설묘지보다 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례로 법인묘지에 적용되는 설치제한지역을 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만, 법인묘지에 적용되는 설치제한지역을 조례로 정할 때에도 붕괴·침수 등으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의 규모나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IV 최신 외국 입법정보

### 세계 각국의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 □ 주요내용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확대를 통하여 자활여건을 조성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였다. 2024년부터는 의무고용률이 3.1~3.6%로 상향 조정되며, 기업이 해당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 독일

독일은 「사회법전 제9권-장애인의 재활과 참여에 관한 법」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154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을 둔 모든 민간 또는 공공 사업자는 전체 근로자의 5%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여성 중증장애인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제160조에 따라 미고용한 장애인 1인당 140 유로~720 유로(약 20만3천원~104만7천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업은 이 부담금을 납부하더라도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 미국

「미국장애인법」으로 장애인의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미국은 연방정부 부처 및 기관별 인력의 12% (일부 장애에 대하여는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에 대하여는 이러한 고용의무를 두지 않는다. 다만, 「재활법」 제503조(미국법전 제29편제793조)는 연방정부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체로 하여금 계약 사무 이행 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장애인 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설정된 현행 권장 목표치는 7%이다.

#### 베트남

베트남에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법」 제33조에서 기관, 단체, 기업 및 개인은 근로 자격요건을 갖춘 장애인의 고용을 거절하거나, 장애인의 근로 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법률

규정에 위배되는 채용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법의 일부조항 세부규정 및 시행지침에 관한 의정」 제9조, 제10조에 따르면 근로자 총수의 30%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사업시설 또는 10명 이상의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단체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노동법」 제28조에 따라 근로자수가 25인 이상이고, 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가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고용기관의 추천 등을 통하여 총 근로자수의 최소 4%를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 법 제229조에서는, 이 법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하여 △10만 리얄(한화 약 3,553만원) 이하의 벌금, △3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영업정지, △사업장 영구폐쇄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장애인법」 제53조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업은 총 근로자 수의 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외의 민간기업도 근로자 수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의무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위반 시의 행정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일본

일본에서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업원이 일정수 이상인 사업주는 종업원 중 신체장애인·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의 비율을 ‘법정고용률’ 이상으로 할 의무가 있다. 2024년 4월부터 민간기업의 법정고용률은 기존의 2.3%에서 2.5%(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법정고용률은 3.0%, 각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의 법정고용률은 2.9%)로 상향 조정되어, 종업원을 40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또한, 주 소정 근로시간이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인 정신장애인, 중증 신체장애인 및 중증 지적장애인의 고용률을 고용률 산정에 편입할 수 있게 된다(1명=0.5로 산정). 만약 법정고용률에 미치지 못한 기업 중 종업원 100명을 초과하는 기업은 부족한 장애인수에 따라 1명당 월 5만엔의 ‘장애인고용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기업은 행정지도의 대상이 되며,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기업명이 공개된다.

### 중국

중국에서 국가기관, 기업, 그 밖의 단체는 「장애인 보장법」 제33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시행하며, 각 사업장은 「장애인 취업 조례」 제8조에 따라 총 근로자 수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해당 지방인민정부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정한다. 다만, 국무원이 통지한 「장애인 취업장려 3개년 행동방안(2022-2024)」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인원 규모에 따라 의무고용률이 상이하지만 1명 이상은 반드시 고용하여야 하고, 국영기업·민간기업은 해당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미납에 대한 경고 및 이행명령을 받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체 1일마다 부담금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 「장애인을 위한 고용쿼터제 승인에 관한 노동사회보장부령」에 따라 총 상시근로자 채용 인원의 일부를 장애인근로자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시행령 제2장에서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은 사업장 근로자 총수가 50명이상 100명 이하인 경우 2%, 101명 이상 250명 이하인 경우 3%, 251명 이상인 경우 4%로 지정하고 있으며, 고용주는 지정된 할당량에 따라 쿼터제의 도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 시의 행정제재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 태국

태국은 「2007년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 및 개발법」 제33조~제36조에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상세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부령으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제정된 현행 부령에 따르면 근로자 100인 이상의 민간 또는 정부 기관 사용자 등은 비장애인 100인당 1인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100단위의 인원에서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1인의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151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2인의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부령에서 정한 산정 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매년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 및 개발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 페루

페루는 「장애인 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장애인 고용 할당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같은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에서는 전체 직원의 3%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에서는 전체 직원의 5% 이상의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해당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12 UIT ~ 15 UIT(2024년도 기준 한화 약 2,200만원 ~ 2,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 프랑스

프랑스는 「노동법전」 제L5212-1조부터 제L5212-17조에서 장애인근로자 고용의무(OETH)를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전체 근로자 수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 비율은 노동시장 상황과 경제활동인구수를 고려하여 매 5년 마다 갱신된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는 고용된 장애인 수에 따라 산정되는 장애인 고용의무 분담금(최저임금의 400배에서 최대 600배)을 매년 납부해야 한다.

### 필리핀

필리핀은 「장애인법」 제5조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은 총 근로자 수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 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인 민간기업도 근로자 수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고용률 미달성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 각국의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공공누리 제1유형, 2024 2. 21.